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524 호

2003 년 7 월 4 일 금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99호(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00호(인천광역시남동구아동위원운영조례)----- 16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01호(인천광역시남동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 19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02호(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24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90호(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예)----- 27
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24호(수용재결신청열람공고(만부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2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25호(수용재결신청열람공고(만수동11)----- 42
1-352번지일원주차장설치공사)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28호(수용재결신청열람공고(간석)----- 44
역~원통로간도로개설공사)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29호(취득세,등록세(부동산)고지서및독촉장공시송달공고)- 4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31호(노상적치물등의보관및처리에관한공고)----- 5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32호(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 54
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논현2택지)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33호(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 56
및이의신청공고(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34호(재결신청서공람공고(수림공원)----- 58
~건설회관간도로개설공사)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조	례
---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7. 4.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99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영 제84조의2의”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4조의2의”로 한다.

제11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 제목을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동조 본문중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허가조건

제22조 제1항중 “잔액에 연5퍼센트”를 “잔액에 연4퍼센트”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잔액에 연8퍼센트”를 “잔액에 연6퍼센트”로 한다.

제24조 제1항중 “제2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를 “제23조제3항의 규정에”로 한다.

제25조의2 제4항중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

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중 “교환차액을” 후단의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퍼센트로 하며,” 를 삭제하고, “연15퍼센트의 연체료를” 을 “영 제100조제6항 각 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로 하며, “고지하여야 한다.” 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 로 한다.

제31조의2 “영 제102조의4” 를 “영 제102조의5로” 한다.

제38조의2 제5항제1호중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을 “기타 이외의 지역에서는” 으로 한다.

제38조의4 제4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 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 ③영제3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50억원이상인 청사등 공용·공공

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 ③(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 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등 상위법 개정
- 이자율을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코자 함
- 과다한 청사신축으로 인한 지방재정운영의 부담 및 부정적영향 해소

○ 주요골자

-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 인하(제22조제1항)
-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분할납부시 이자율 인하
- 청사등의 설계시 행정자치부 지방청사 표준면적기준 적용(제47조)

[별표(제47조 관련)]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1. 구의 본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m²)

구 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담당 또는 계장	직 원
구 본 청	99	38.88	38.88	17.92	7.65	7.2
동 청 사	23	14.80	-	-	7.65	7.2

나.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²)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충장비실	사무공간	500m ²		800m ²		1,000m ²	
	충장비실	6.6m ²		8.4m ²		10.2m ²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다. 부속공간 면적

(단위 : m²)

실 명		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4~2.4㎡/인	26~1.5㎡/인	2~1.2㎡/인	1.6~1㎡/인	1.2~0.9㎡/인	
상 황 실	구	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기타부분을 포함하여 기준층 면적의 27%~33%
		0.43㎡ / 인		0.40㎡ / 인		0.33㎡ / 인	
	엘리베이터	(12.87~19.6㎡) × 대수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 / 인	11.52㎡ / 인		8.64㎡ / 인		
자 료 실		(0.3~0.4㎡) × 공무원수					
창 고		0.72㎡/인 ~ 0.85㎡/인					
전 산 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라. 공용면적(로비, 복도, 계단)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 30~40%]

2. 구의회 청사

(단위 : m²)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 원 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	구 위원회 수 : 3개	
회 의 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	면적범위내에서 적절한 규모로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 8.2㎡	위원회 수 : 3개	
부 속 공 간	c	사무국장실	38.88 ~ 64.0㎡		
		사 무 실	직원 수 × 7.2㎡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		
		대기실	의 원	의원 수 × 2.5㎡	
			기 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 × 2㎡	
			직 원	직원 수 × 2㎡	
			방청객	방청객 수* × 2㎡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		
		화 장 실	구 : 44~46㎡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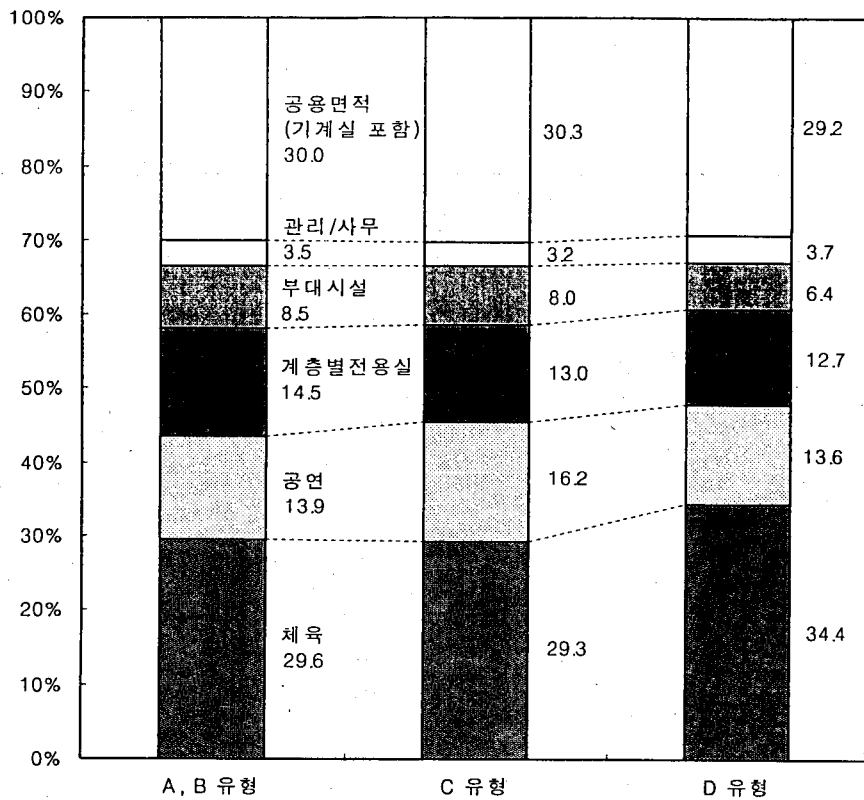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3. 종합회관

가. 인구규모별 설계유형

유형	인 구	수 용 시 설 설 정
A	30-50만명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 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틀 마련한다. -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B	15-30만명	-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 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틀 마련한다. -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C	10-15만명	-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식 스탠드의 규모를 다소 축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연장 규모는 400석이나 A유형보다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 각 시설별로 수용개설을 줄이거나,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각종 활동의 위축 등은 될 수 있으면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D	10만 미만	-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m')

구 분	A유형 (인구30-50만)	B유형 (인구15-30만)	C유형 (인구10-15만)	D유형 (인구10만미만)	비 고
순 면 적 (Net Area)	6,600	5,494	3,955	2,313	
공용면적(기계실포함)	2,827	2,365	1,724	958	
연면적 (Gross Area)	9,427	7,851	5,679	3,341	· 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하는 공용면적은 $\pm 5\sim 10\%$ 를 별도로 고려한다. ·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	70.0%	70.0%	69.6%	69.2%	

1) 공연시설

(단위 : m')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극장	객 석	480	400	320	160
	무 대	290	240	240	120
	연습실	55	55	50	30
	분장실(남,여)	41	35	24	10
	분장실전용화장실	11	9	7	3
	악실 (1)	14	12	10	15
	악실 (2)	14	12	10	-
	소계 ①	905	763	661	338
부속 시설	도구비치창고	216	180	120	40
	도구반입실	33	-	-	-
	영사실	48	40	30	20
	음향실	36	30	30	20
	기기실(무대)	36	30	25	-
	조명실	24	20	20	20
	측벽부광실	12	12	12	-
	방송중계실	12	10	10	-
	소계 ②	417	322	247	100
합계	계 ① + ②	1,322	1,085	908	438
	공용부분	881	723	605	292
	합 계	2,203	1,808	1,513	730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아동실	아동실(1)	68	60	30	30
	아동실(2)	68	60	30	-
	부속창고	6	4	4	4
	소계 ⑤	142	124	64	34
청소년실	청소년실(1)	60	50	50	50
	청소년실(2)	40	35	-	-
	소계 ⑥	100	85	50	50
노인실	노인실(남)	60	50	50	30
	노인실(여)	60	50	50	30
	휴게실	36	30	30	-
	주 방	8	6	-	-
	건강상담실	30	24	10	-
	소계 ⑦	194	160	140	60
부녀실	부녀실(1)	120	108	50	50
	부녀실(2)	120	108	50	50
	부녀실(3)	35	35	35	-
	소계 ⑧	275	251	135	100
공용 시설	강의실	75	60	60	60
	회의실(1)	90	70	70	70
	회의실(2)	90	70	70	35
	회의실(3)	70	70	-	-
	회의실(4)	40	35	-	-
	다목적실	174	144	120	-
	주 방	18	14	8	-
	기자재창고	18	14	12	-
	전시코너	36	30	-	-
	소계 ⑨	611	507	340	165
합계	계 ⑤-⑨	1,322	1,127	729	409
	공용부분	712	607	373	220
	합 계	2,034	1,734	1,122	629

3) 부대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전시 시설	전시실	216	162	108	54
	작업실	43	35	23	12
	창 고	43	35	23	12
	소계 ⑩	302	232	154	78
도서 시설	도서실	308	257	147	100
	소계 ⑪	308	257	147	100
식당 휴게 시설	식 당	85	70	70	-
	주방 및 창고	38	32	32	-
	휴게실	82	70	46	28
	소계 ⑫	205	172	148	28
합계	계 ⑩-⑫	815	661	449	206
	공용부분	349	283	192	88
	합 계	1,164	944	641	294

4) 체육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경기장	경기장	1,344	1,104	714	646
	강의실(남)	27	21	21	12
	샤워실(남)	27	21	21	12
	강의실(여)	15	12	12	6
	샤워실(여)	14	12	12	6
	부속실(1)	72	60	40	20
	부속실(2)	48	40	40	30
	대기실	26	22	22	15
	장비실	145	120	75	60
	무대(집회용)	240	200	151	95
	트레이닝실 (소체육실)	120	100	50	-
	소계 ⑬	2,078	1,712	1,158	902
관람석	관람석	720	600	480	210
	상부발코니	-	-	-	-
	소계 ⑭	720	600	480	210
합계	계 ⑬+⑭	2,798	2,312	1,638	1,112
	공용부분	700	578	410	278
	합 계	3,498	2,890	2,048	1,390

5) 기타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사무실	관리사무실	87	72	51	22
	관장실	64	64	64	30
	응접 및 탕비실	26	26	26	26
	소회의실	32	27	20	10
	숙직실	12	10	10	10
	안내인방송코너	12	10	10	-
	직능단체사무실(1)	55	50	50	50
	직능단체사무실(2)	55	50	-	-
	소계 ⑬	343	309	231	148
합 계	계 ⑬	343	309	231	148
	공용부분	185	166	124	80
	합 계	528	475	355	228

4. 보건소

(단위 : m²)

구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진 료 활 동	접수 / 수납	13.86	
	의무기록창고	10.89	
	대기공간	48.00	
	약국조제실	13.86	
	약국창고	13.86	
	일반진찰실	53.46	
	치치실	17.80	
	치과진찰실	27.54	
	치과장비실	2.70	
	치과용 압실	2.16	
	소독실	8.91	
	예방접종실	17.82	
	소아놀이실	9.90	
	수유실	7.92	
	화장실	31.68	
	장애인용 화장실	4.86	

보건 사업	b	결핵관리실	17.82	
		상담실	35.64	
		방사선실	81.66	
진료 지원	c	임상검사실	65.34	
사 무 부 문	d	소장실	동장실 면적 준용	
		전실(당비실)	9.90	
		소회의실	17.82	
		사무실	직원 수 × 7.2 m ²	
		다목적실	144	
		창고	59.4	
		여자휴게실	40	
		당직실	13.86	
설비	e	화장실	17.82	
		기계실 및 전기실	66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b+c+d+e) × 30~40%	

5. 농업기술센터

(단위 : m²)

구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 고
업무 공간	a	기관장실	읍·면장실 면적 준용
		사무실	직원 수 × 7.2
소요 공간	b	조직배양실	82.5 내외
		종합검정실	72.6 내외
		가축질병진단실	36.3 내외
		꽃가루은행	99 내외
		여성기능교육실	66 내외
		화상정보시스템	66 내외
		농기계수리지원센터	330내외
		예비실	1개소(50) 정도 확보
공용 공간	c	휴게실	직원 수 × 2
		화장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한다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아동위원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7. 4.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00호

인천광역시남동구아동위원운영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위원의 정수)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동에 1인 이상으로 한다.

제3조(아동위원의 역할)①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도
3.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 즉시 구 또는 동에 알림
4. 소년소녀가정의 보호 및 지원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 등

②아동위원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 및 동의 아동복지업무 담당자와 상호협조하고,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며, 아동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위원의 위촉) ①아동위원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관할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활동미진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①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회이상 연임할 수 없다.

②보궐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수당 등)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관내 아동에 대하여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구 또는 동
의 아동복지업무담당자와 상호협조하여 아동 복지에 필요한 상담 및 지원을
적기에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아동위원 운
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늘어나는 아동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아동위원의 정수를 명시함(제2조)
- 아동위원의 역할 및 의무를 명시함(제3조)
- 아동위원의 위·해촉 사유를 명시함(제4조)
- 아동위원의 임기를 명시함(제5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7. 4.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01호

인천광역시남동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재래시장의 자생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현대화 및 정보화를 필요로 하거나 건물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을 말한다.

2. “인근구역”이라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인접한 일정 범위 안의 가로 또는 건물 지하도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등록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 진흥조합이 조직되지 아니한 다수의 점포가 밀집된 지역으로 도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 시장활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사회경제국장으로 한다.
②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남동구의회 의원, 도시정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교통과장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유통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등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장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장활성화 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시장활성화와 관련한 지원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활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위원회는 구청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및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서기는 경제담당으로 한다.

제9조(수당)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구에서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정비사업) 구에서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구역내 공중화장실(소비자보호실등 기타 공공시설 포함)
2. 공영주차장
3. 구역내 홍보, 안내판, 조형물
4. 구역내 화재예방시설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경영개선지원)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활성화 연구, 지원용역
 2. 경영지도, 선진유통기법과 정보화에 관한 교육 실시
 3. 선진지 견학(대규모점포, 재래시장, 상점밀집지역등)
 4. 기타 구청장이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대규모점포 상인)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지원) ①구역내 번영회(구에서 인정하는 상인대표 조직)는 제10조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번영회등 상인대표 조직에서 보조금 요청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원이 구비일 경우 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재원이 국·시비일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일정율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상인의 의무) ①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 및 지원과 관련 시장번영회와 상인들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향상과 고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번영회와 상인들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장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구역지정) ①구청장은 제10조및 제11조1항의 시행과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전 대상이 되는 시장의 범위를 설정하여 구보에 구역지정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구역 지정고시와 관련 효율적인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과 인접된 인근 구역을 시장에 포함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인접한 인근구역의 포함은 그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외의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추진, 계획중인 사업이 있을 경우 구역지정의 취소 또는 활성화 관련사업 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지정된 구역내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구역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5조(아케이드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 ①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제11호에 의거 관리청이 구청인 도로의 경우 구청장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재래시장 구역범위내 도로에 대하여는 아케이드 설치에 대한 도로점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시 관할 소방서와 협의를 거쳐 충분한 화재예방 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유통시장 개방이후 대형유통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진출과 현대화 된 대규모 시설의 유통시장 참여로 시설이 노후하고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를 가진 재래시장 침체가 날로 심각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정비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의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구에서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정비사업 종류(제10조)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 지원 종류(제11조)
-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구에서 지원하는 방안(제12조)
- 아케이트 설치에 대한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제15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7. 4.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02호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도시계획법 제85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제114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인천광역시장”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장”으로 하고 “위임된”을 “위임 또는 재위임된”으로 한다.

제2조중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등에 관한 심의

제3조제2항중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구청장이 된다”를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중 “토지이용·교통·환경”을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으로 하고 “3분의 2이상”을 “50퍼센트”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위원장의 직무등)”을 “(위원장 등의 직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및 제1항 내지 제6항의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3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으로 하고 “소위원회”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7조중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상위 규정에 부합 되도록 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의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 법규에 부합되도록 조정(제1조)
-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조정(제3조)
- 소위원회의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명칭변경(제6조 및 제7조)

규 칙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예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7. 4.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90호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예행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예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등)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고대상 쓰레기는 생활폐기물에 한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이 5만원인 휴지, 담배꽂초, 전단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사유

· 현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미비사항 보완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에 따른 1인 다량 신고 내용이 특정 경미사항(휴지, 담배꽂초투기)을 위주로 신고가 이루어짐에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의협심 보다는 신고포상금 돈벌이등 직업화하여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민원 유발과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로 악용되고 있어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코자 함

○ 주요골자

- 신고대상 쓰레기를 생활폐기물 중 과태료 부과금액이 5만원인 휴지, 담배꽂초, 전단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제11조)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24호

수용재결신청열람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만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가 있으신 분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7. 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만부주거환경개선사업
2. 사업시행자(기업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일원
4. 사업내역 : 면 적

사업기간 2002. 5. 30 ~ 2005. 12. 31

5. 열람기간 : 2003. 7. 1 ~ 2003. 7. 15
6.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 453 - 2662)
7. 의견서 제출처 :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남동구청도시계획과
8. 수용대상내역 : "별첨"(기업자제시액조서)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453-26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업 자 제 시 액 조 서(토지)

민주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단위 : 원)

수용토지의 표시					단가	보상액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공부	실제									
만수동	1-363	대	대	39.23	575,000	22,561,270	인천 연수구 옥련동 405-40	김연동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근저당	대한주택은행(인천지점) 신용보증기금 주택사건공제조합 영남건설(주) 신용보증기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서울 마포구 중곡동 284-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인천 남구 용현동 286-9	
만수동	1-109	대	대	8	575,000	4,600,000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09	김수덕	근저당	축산협동중앙회	서울 강동구 선내동 451	
만수동	1-365	대	대	75	575,000	43,125,000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09	김수덕	근저당	축산협동중앙회	서울 강동구 선내동 451	
만수동	1-112	대	대	28	600,000	16,800,000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12	최은숙				
만수동	1-366	대	대	6	600,000	3,600,000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12	최은숙				
만수동	1-113	대	대	38	620,000	23,560,000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13	김점향				
만수동	1-367	대	대	25	620,000	15,500,000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13	김점향				
만수동	1-116	대	대	66.1	600,000	39,660,000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16	김난초				
만수동	1-372	대	대	3.12	685,000	2,137,200	인천 남동구 만수동 13 주공(아)417/204	김태복				
만수동	1-372	대	대	1.56	685,000	1,068,600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37	백애화				
만수동	1-372	대	대	1.32	685,000	904,200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37	최소옥				
만수동	1-148	대	대	80	660,000	52,800,000	대전 서구 내동 220-2 롯데 (아)110/906	이무현				
만수동	1-375	대	대	12	660,000	7,920,000	대전 서구 내동 220-2 롯데 (아)110/906	이무현				
만수동	1-149	대	대	53	640,000	33,920,000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49	안철남	근저당	국민은행(송의동지점) 국민은행(신곡동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19-1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19-1	
만수동	1-376	대	대	24	640,000	15,360,000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49	안철남	근저당	국민은행(송의동지점) 국민은행(신곡동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19-1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19-1	
만수동	1-383	대	대	10	685,000	6,850,000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58	김현숙				

기 업 자 제 시 액 조 서(토지)

민주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단위 : 원)

수용토지의 표시					단가	보상액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권리의종류	성명	주소	
		공부	실제									
민수동	1-193	대	대	66	640,000	42,240,000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93	김기준				주 소
민수동	1-204	대	대	66	640,000	42,240,000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204	안원복				
민수동	1-230	대	대	24	655,000	15,720,000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10	유병우	근저당 상속권 상속권 상속권 상속권	이은영 김관덕 유관환 유관현 유애수	서동원권구 동신동293-10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10 인천 남동구 민수동 866-10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10 남동구 민수동13 주공 413/1013 남동구 민수동 5-192 201호	
민수동	1-390	대	대	1	655,000	655,000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10	유병우	근저당 상속권 상속권 상속권 상속권	이은영 김관덕 유관환 유관현 유애수	서동원권구 동신동293-10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10 인천 남동구 민수동 866-10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10 남동구 민수동13 주공 413/1013 남동구 민수동 5-192 201호	
민수동	1-266	대	대	46	620,000	28,520,000	인천 남동구 민수동 1-266	최승호				
	1-401	대	대	24	620,000	14,880,000	인천 남동구 민수동 1-266	최승호				
민수동	1-402	대	대	23	820,000	18,860,000	인천 남동구 민수동 1-272	조순자				
민수동	1-341	대	대	39	830,000	32,370,000	인천 남동구 민수동 1-36	권용진				
민수동	1-341	대	도로	12	255,000	3,060,000	인천 남동구 민수동 1-36	권용진				
	합계					488,911,270		17명				

기 업 자 제 시 액 조 서(지장물)

(단위: 원)

소재지	지번	수용물건의 표시		면적 (㎡)	인천광역시지정액		인수액	인수구분	관 계 인	주 소
		물건종류	구 조		평균	금액				
민수동	1-109	주택(1층)채광가	적벽돌스라브	61.69	385,000	23,750,650	김수덕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09	숙신업협동중앙회 근저당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1
민수동	1-109	주택(2층)	세멘트벽돌스라브	83.41	435,000	36,283,350				
민수동	1-109	창고(3층)	세멘트벽돌스라브	10.08	205,000	2,066,400				
민수동	1-109	화장실	세멘트벽돌스라브	2.02	식	750,000				
합계						62,850,400				
민수동	1-112	주택	블럭기와 및스라브	29.15	450,000	13,117,500	최은숙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12		
합계						13,117,500				
민수동	1-113	주택(전채광가)	브릭스라브	65.61	440,000	28,868,400	김점향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13		
민수동	1-113	보일러실	목조	1.47	식	100,000				
민수동	1-113	창고	쉬파이프천막	24	42,500	1,020,000				
합계						29,988,400				
민수동	1-116	주택	블럭기와	50.83	410,000	20,840,300	김난초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16		
민수동	1-116	창고 및화장실	블럭스라브	2.76	식	800,000				
민수동	1-116	차량	편라이트	5.25	20,000	105,000				
민수동	1-116	대문(문주포함)	철재,스라브	1	—	900,000				
합계						22,645,300				
민수동	1-137	주택(1층)포수비포함)	브릭스라브	8.73	식	8,700,000	백애화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37		
민수동	1-137	주택(2층)포수비포함)	윈드워치판넬	5.49	식	3,200,000				
민수동	1-137	창화조		1	주택에포함					

기 업 자 제 시 액 조 서(지장물)

(단위 : 원)

소재지	지번	수용물건의 표시		면적 (㎡)	사업시행자 (명)		사업시행 금액	소유자 주소	국유지종류	성명	주 소
		물건종류	구조		명수	금액					
합계						11,900,000					
민수동	1-148	주택(1층)	적벽돌스라브	59.74	475,000	28,376,500	이무현	대전 서구 내동 220-2 롯데(아)110-906			
민수동	1-148	주택(2층)	적벽돌스라브	56.64	475,000	26,904,000					
민수동	1-148	보일러실	블록스레프트	13.72	135,000	1,852,200					
민수동	1-148	지하실(공장, 방)	콘크리트스라브	41.13	305,000	12,544,650					
민수동	1-148	파고라	목재	1	--	200,000					
민수동	1-148	출입문	철재	1	--	200,000					
민수동	1-148	계단	콘크리트	2	건물에포함						
민수동	1-148	대추나무		1	임관	90,000					
민수동	1-148	싸리나무		1							
민수동	1-148	사철나무		1							
민수동	1-148	포도나무		1							
민수동	1-148	지하(공장,방)추가	콘크리트 스라브	8.07	305,000	2,461,350					
민수동	1-148	1층계단실	벽돌스라브	3.84	식	600,000					
민수동	1-148	2층계단실	벽돌스라브	3.2	식	600,000					
민수동	1-148	1층창고	벽돌스라브	2.28	식	475,000					
민수동	1-148	환기구		1	식	50,000					
민수동	1-148	차 양	철재,천막	2	임관	60,000					
민수동	1-148	테라스(1층)	철 재	2	임관	20,000					

기 업 자 제 시 액 조 서(지장물)

(단위 : 원)

소재지	지번	수용물건의 표시		면적 (㎡)	사립시행지대지역		인원 (명)	신용사	관계인	주 소
		물건종류	구조		영권	영역				
민수동	1-148	화단(1층)		4.56	식	50,000				
민수동	1-148	테라스(2층)	상시	1	식	100,000				
민수동	1-148	테라스(옥상)	철근콘크리트	1	주택에 포함	주택에 포함				
민수동	1-148	화단(옥상)		3.15	식	50,000				
합계						74,633,700				
민수동	1-149	주택(1층)	블럭스라브	61.1	450,000	27,495,000	안철남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49	국민은행(송의동지점) 국민은행(산곡동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3-1
민수동	1-149	창고 및 화장실	블럭스라브	2.65	식	900,000				
민수동	1-149	주택(2층)	블럭기와	63.29	445,000	28,164,050				
민수동	1-149	보일러실	블럭스라브	1.31	식	325,000				
민수동	1-149	옥탑	블럭스라브	5.04	170,000	856,800				
민수동	1-149	지하창고	콘크리트스라브	5.4	260,000	1,404,000				
민수동	1-149	철계단		1	--	200,000				
민수동	1-149	대문	스라브문주포함	1	--	500,000				
합계						59,844,850				
민수동	1-151	주택	블럭스라브	44.07	--	16,305,900	김인배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51		
민수동	1-151	창고	블럭스라브	3.1	41	600,000				
민수동	1-151	화장실	블럭스라브	3	식	725,000				
민수동	1-151	면장	적벽돌	6	80,000	480,000				
민수동	1-151	대문	블럭, 스테인주포함	1	--	650,000				

기 업 자 제 시 액 조 서(지장물)

(단위: 원)

소재지		수용권의 표시		면적 (㎡)	시정시행지세액		가액	인원	지정 인수	관 계 인	주 소
		지번	용건종류		구적	영구	금액				
민수동	1-151	오동나무	H4XR25	1		--	50,000				
합계							18,810,900				
민수동	1-158	주택(1층:보수비포함)	세멘트블스리브	7.96		식	8,150,000	김현숙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58		
민수동	1-158	주택(2층:보수비포함)	알미늄스시	9.69		식	4,450,000				
민수동	1-158	대문(문주포함,알루미늄)	B=2.3 소라브	1		--	900,000				
민수동	1-158	정화조		1		주책에 포함					
합계							13,500,000				
민수동	1-193	주택	블럭스리브	52.93		465,000	24,512,450	김기준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93		
민수동	1-193	보일러실및화장실	블럭스리브	2.85		식	800,000				
민수동	1-193	차량	콘크리트	6.78		20,000	135,600				
민수동	1-193	대문(문주포함)	스시,스리브	1		--	900,000				
합계							26,448,050				
민수동	1-204	주택(1층)	블럭스레트	56.09		345,000	19,351,050	인원복	인천 남동구 민수동 1-204		
민수동	1-204	주택(2층)	블럭스레트	15.34		205,000	3,144,700				
민수동	1-204	보일러실	목조	1.96		식	100,000				
민수동	1-204	보일러실	목조	1		식	50,000				
합계							22,645,750				
민수동	1-230	주택(1층)	블럭스리브	21.06		440,000	9,266,400	유형우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10	이원영 김관덕 유준혁 유건혁 유혜순	서울 금천구 독신동293-10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10 인천 남동구 민수동 866-10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10 남동구 민수동13 차공413-1013
민수동	1-230	부엌 및욕실	블럭스레트	6.21		275,000	1,707,750				

기 업 자 제 시 액 조 서(지장물)

(단위: 원)

소재지	지번	수용물건의 표시		면적 (㎡)	사건(지장물)		면적 (㎡)	지번	수용물건	성명	주 소
		물건종류	구 조		원인	금액					
인수동	1-230	방(2층)	불력기와	8.28	335,000	2,773,800				유애순	남동구 인수동 13-1 주공 413/1013
합계						13,747,950				유우철	남동구 인수동 5-192 201 호
인수동	1-266	주택(전세임가)	세멘트돌기와	59.31	440,000	26,096,400			인천 남동구 인수동 1-266		
인수동	1-266	창고외화장실	세멘트돌스리브	7.56	285,000	2,154,600					
합계						28,251,000					
인수동	1-272	정포주택(보수비포함)	적벽돌스리브	13.92	식	11,400,000			장기동, 권포자, 안봉룡 1156-1(한리(아))403-663		
인수동	1-272	정화조		1	주택에 포함						
합계						11,400,000					
인수동	1-272	주택(보수비포함)	적벽돌기와	13.58	식	10,650,000			인천 남동구 인수동 1-158		
합계						10,650,000					
인수동	1-36	정포(보수비포함)	세멘트돌스리브	19.43	식	11,250,000			인천 남동구 인수동 1-36		
인수동	1-36	주택(보수비포함)	세멘트돌기와	15.13	식	10,950,000					
합계						22,200,000					
			합계			863,067,600			16명		

기 업 자 제 시 액 조 서(지장물)

(단위: 원)

수용물건의 표시			면적 (㎡)		사업시행지역		인수용지		관계인	
소재지	지번	용건종류	구조	면적 (㎡)	평균	금액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성명
인수동	1-109	주택(1층)채평가	적벽돌스라브	61.69	385,000	23,750,650				
인수동	1-109	주택(2층)	세멘트돌스라브	83.41	435,000	36,283,350				
인수동	1-109	창고(3층)	세멘트돌스라브	10.08	205,000	2,066,400	김수덕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09	근저당	축산업협동중앙회
인수동	1-109	화장실	세멘트돌스라브	2.02	식	750,000				
합계						62,850,400				
인수동	1-112	주택	블럭기와 및스라브	29.15	450,000	13,117,500	최은숙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12		
합계						13,117,500				
인수동	1-113	주택(전세평가)	트럭스라브	65.61	440,000	28,868,400	김정환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13		
인수동	1-113	보일러실	목조	1.47	식	100,000				
인수동	1-113	창고	외파아프천막	24	42,500	1,020,000				
합계						29,988,400				
인수동	1-116	주택	블럭기와	50.83	410,000	20,840,300	김민초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16		
인수동	1-116	창고 및화장실	블럭스라브	2.76	식	800,000				
인수동	1-116	차량	컨리이트	5.25	20,000	105,000				
인수동	1-116	대문(문주포함)	철재 스라브	1	—	900,000				
합계						22,645,300				
인수동	1-137	주택(1층)보수비포함)	트럭스라브	8.73	식	8,700,000	백예화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37		
인수동	1-137	주택(2층)보수비포함)	샌드위치판넬	5.49	식	3,200,000				
인수동	1-137	창화조		1	주택에 포함					

기 업 자 제 시 액 조 서(지장물)

(단위 : 원)

수용물건의 표시		면적 (㎡)		1:500인식지정액		권리의 종류		판 계 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면적 (㎡)	평균	금액	상·하	성명	주 소
합계						11,900,000			
민수동	1-148 주택(1층)	벽돌스라브		59.74	475,000	28,376,500	이무현		대전 서구 내동 220-2 롯데(O)110-906
민수동	1-148 주택(2층)	벽돌스라브		56.64	475,000	26,904,000			
민수동	1-148 보일러실	블럭스레트		13.72	135,000	1,852,200			
민수동	1-148 지하실(중앙/방)	콘크리트스라브		41.13	305,000	12,544,650			
민수동	1-148 파고라	목재		1	--	200,000			
민수동	1-148 출입문	철재		1	--	200,000			
민수동	1-148 계단	콘크리트		2	건물에포함				
민수동	1-148 대수나무			1	임괄	90,000			
민수동	1-148 싸리나무			1					
민수동	1-148 사철나무			1					
민수동	1-148 포도나무			1					
민수동	1-148 지하(중앙외방) 추가	콘크리트 스라브		8.07	305,000	2,461,350			
민수동	1-148 1층계단실	벽돌스라브		3.84	식	600,000			
민수동	1-148 2층계단실	벽돌스라브		3.2	식	600,000			
민수동	1-148 1층창고	벽돌스라브		2.28	식	475,000			
민수동	1-148 환기구			1	식	50,000			
민수동	1-148 차 양	철제천막		2	임괄	60,000			
민수동	1-148 테라스(1층)	철 재		2	임괄	20,000			

기 업 자 제 시 액 조 서(지장물)

(단위: 원)

수용물건의 표시			면적 (㎡)	사업시행지제상액			관 계 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평균	금액	성명	권리의 종류	성명	주 소
민수동	1-148	화단(1층)	4.56	식	50,000				
민수동	1-148	테라스(2층)	1	식	100,000				
민수동	1-148	테라스(옥상)	1	주택에 포함	주택에 포함				
민수동	1-148	화단(옥상)	3.15	식	50,000				
합계					74,633,700				
민수동	1-149	주택(1층)	61.1	450,000	27,495,000	인철남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49	국민은행(송의동지점) 국민은행(신곡동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9-1
민수동	1-149	창고 및 화장실	2.65	식	900,000		근저당		
민수동	1-149	주택(2층)	63.29	445,000	28,164,050				
민수동	1-149	보일러실	1.31	식	325,000				
민수동	1-149	옥탑	5.04	170,000	856,800				
민수동	1-149	지하창고	5.4	260,000	1,404,000				
민수동	1-149	철계단	1	--	200,000				
민수동	1-149	대문	1	--	500,000				
합계					59,844,850				
민수동	1-151	주택	44.07	--	16,305,900	김인배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51		
민수동	1-151	창고	3.1	식	600,000				
민수동	1-151	화장실	3	식	725,000				
민수동	1-151	담장	6	80,000	480,000				
민수동	1-151	대문	1	--	650,000				

기 업 자 제 시 액 조 서(지장물)

(단위: 원)

소재지	지번	수용물건의 표시		면적 (㎡)	시액(합계지액)		시유지		관 계 인
		물건종류	구 조		평균	금액	면적	주 소	
인수동	1-151	오동나무	H4R25	1	--	50,000			성명
합계						18,810,900			
인수동	1-158	주택(1층:포수비포함)	세멘트블록스라브	7.96	식	8,150,000	김현숙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58	
인수동	1-158	주택(2층:포수비포함)	알미늄샷시	9.69	식	4,450,000			
인수동	1-158	대문(문주포함,알루미늄)	B=2.3,스라브	1	--	900,000			
인수동	1-158	정화조		1	주액에 포함				
합계						13,500,000			
인수동	1-193	주택	블록스라브	52.93	465,000	24,612,450	김기준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93	
인수동	1-193	보일러실및화장실	블록스라브	2.85	식	800,000			
인수동	1-193	차암	콘크리트	6.78	20,000	135,600			
인수동	1-193	대문(문주포함)	샷시,스라브	1	--	900,000			
합계						26,448,050			
인수동	1-204	주택(1층)	블록스레트	56.09	345,000	19,351,050	안원복	인천 남동구 민수동 1-204	
인수동	1-204	주택(2층)	블록스레트	15.34	205,000	3,144,700			
인수동	1-204	보일러실	목조	1.96	식	100,000			
인수동	1-204	보일러실	목조	1	식	50,000			
합계						22,645,750			
인수동	1-230	주택(1층)	블록스라브	21.06	440,000	9,266,400	유영우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10	이은영 김광석 유영우 유창철 유재순
인수동	1-230	부엌및욕실	블록스레트	6.21	275,000	1,707,750			서울 금천구 독산동 293-10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10 인천 남동구 민수동 866-13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10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10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10

기 업 자 제 시 액 조 서 (지 장 물)

(附 答)

수용물건의 표시				관 계 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면적 (㎡)	시·읍·면지번 면적 (㎡)	소재지	성명	주 소
민수동	1-230	방(2층)	돌벽기와	8.28	335,000	2,773,800	유애순 유우혁	남동구 민수동13 주공413/1013 남동구 민수동 5-192 201 호
합계						13,747,950		
민수동	1-266	주택(전세임가)	세멘벽돌기와	59.31	440,000	26,096,400		
민수동	1-266	창고및화장실	세멘벽돌스라브	7.56	285,000	2,154,600		
합계						28,251,000		
민수동	1-272	점포주택(민수비포함)	작벽돌스라브	13.92	식	11,400,000		경기도 군포시 신원동 1156-1한라(아)403-503
민수동	1-272	정화조		1	주택에포함			
합계						11,400,000		
민수동	1-272	주택(민수비포함)	작벽돌기와	13.68	식	10,650,000		인천 남동구 민수동 1-158
합계						10,650,000		
민수동	1-36	점포(민수비포함)	세멘벽돌스라브	19.43	식	11,250,000		인천 남동구 민수동 1-36
민수동	1-36	주택(민수비포함)	세멘벽돌기와	15.13	식	10,950,000		
합계						22,200,000		
			합계			442,633,800	16명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25호

수용재결신청열람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만수동111-352번지일원주차장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을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가 있으신 분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7. 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주거환경개선사업
(만수동111-352번지일원주차장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기업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일원
4. 사업내역 : 면 적 313㎡
사업기간 1993. 10. ~ 2004. 12. 31
5. 열람기간 : 2003. 7. 1 ~ 2003. 7. 15
6.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 453 - 2662)
7. 의견서 제출처 :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남동구청도시계획과
8. 수용대상내역 : "별첨"(기업자제시액조서)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453-26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자재시액조사(토지)

[단위 : 원]

수용토지의 표시				금액	소유자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소	성명	권리의 표시	성명	주소
동명	지번	지목	실제						
만수동	109-366	대	109× 1/9	64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85-2,3은 행마을태평아파트 414-1907	김관중	채권압류 근저당 강제경매 가압류	국민은행(강원구) 주택은행(용현동지점) 방양숙 장영상	남동구 구월동 1489-1 영종포구 여의도동 36-3 연수구 선학동 아주102/1503 부평구 신곡동 411-7
만수동	109-366	대	109× 1/9	64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3 주공아파트 418-1101	전영규	강제경매 가압류	방양숙 장영상	연수구 선학동 아주102/1503 부평구 신곡동 411-7
합계						2인			
						15,502,220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28호

수용재결신청서공람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간석역~원통로간 도로개설공사<중로1류135호선>”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 7. 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와명칭 : 간석역 ~원통로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L=695.9m, B=24m
4.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부평구 십정동 일원
5. 열 램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설과
6. 열 램 기 간 : 2003. 7. 1 - 7. 15.
7. 기 타 사 항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건설과에 문의 또는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
에 대한 서류 송달은 소유자등에 대하여 개별통지하였으나, 미수령시 이 공
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자제시액조서(토지)

○ 사업명 : 간석역 ~ 원통로간 도로개설공사

(단위 : m², 원)

- 토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사업시행자제시액		소유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분	단 가	금 액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공부	실제								
간석동	762-80	대	대	6	1/1	705,000	4,230,000	인천남동구구월동24 주공252-404	김인택	인천 남구 주안동 80-1	신한은행
	617-104	잡	잡	242.3	1/1	510,000	123,573,000	인천연수구선학동352 뉴스울(아)103-1301	김경창	인천 남구 주안동 17-1	증산기업은행
십정동	535-105	잡	잡	186	88.375 /1,515	485,000	5,262,250	인천 남구 주안동22-26	정경복	인천 동구 창영동 41	인천세무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703	정복례
										꽃피양지마을대우(아)123-902	정복례
										인천 남동구 간석동182-5	정송자
										대우로얄빌라나-201	정송자
										서울 마포구 성산동 24-5	정홍기
										유림빌라 101	정홍기
인천 부평구 산곡동 307	정숙자										
현대(아)104-806	정숙자										
인천 연수구 선학동 392	정홍철										
아름빌라 14-B02	정홍철										
인천 부평구 부평동 113-29	정영자										
선경하이츠빌라 302	정영자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안정리146										정경순	

사업자제시액조서(토지)

○ 사업명 : 간석역 ~ 원동로간 도로개설공사

- 토지

(단위 : m², 원)

소재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사업시행자제시액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분	단가	금액	주소	성명	성명
십정동	535-105	잡	186	88.375 /1,515	485,000	5,262,250	인천 남구 주안동22-26	정경복	정홍근
							충남 천안시 직산읍 군서리 428-3 청호(아)104-501	구자봉	정옥자
							인천 남구 주안동 1281-8	민영동	국민은행
							인천 남구 주안동 1281-8	민영동	우리은행
							인천 남구 주안동 1281-8	민영동	이형국
십정동	535-105	잡	186	63.125 /1,515	485,000	3,758,750	인천 남구 주안동 1281-8	민영동	부평구세무과
							인천 남구 주안동 1281-8	민영동	신원보증기금
							인천 남구 주안동 1281-8	민영동	부평구세무과
							인천 남구 주안동 1281-8	민영동	부평구세무과
							인천 남구 주안동 1281-8	민영동	연수구세무과

사업자제시액조서(토지)

○ 사업명 : 간석역 ~ 원통로간 도로개설공사

- 토지

(단위 : m², 원)

소재지	지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사업시행자제시액		소유자		관계인	
		지목	면적 (m ²)	지분	단가	금액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십정동	535-106	공부	320	1/10	485,000	15,520,000	인천 부평구 십정동 359-2	이장관	인천 남구 주안동 894-3	인천축산업 협동조합
		실제					서울성동구금호동3가 1193-102	편해광	인천 서구 연희동 683-5	서인천세무서
		합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지사
		합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141	이윤근
		합							인천 부평구 부평동 879	부평구과세무

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지장물)

○ 사업명 : 간석역 ~원통로간 도로개설공사

(단위 : m², 원)

- 지장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사업시행자제시액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번	물건명	면적 (m ²)	지분	단 가	금 액	주 소	성 명	주 소
십정동	542-2	컨테이너	3.0×6.0	1/1	300,000	300,000	인천부평구삼산동388-7 삼산주공미래타운206-1103	권철수	
	535-98	담장	19.6m	1/1	294,000	294,000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7-76 영화빌라 5/303	금명호	
		담장	5.5m	1/1	242,000	242,000			
	542-2	펜스	95.9m	1/2	959,000	959,000	인천 남동구 만수동 13 주공(아)410-1403	한연길	
		철재문	B=9.2m	1/2	175,000	175,000			
		철재문	B=7m	1/2	162,500	162,500			
		펜스	95.9m	1/2	959,000	959,000			
		철재문	B=9.2m	1/2	175,000	175,000	인천 부평구 산곡동 124-1 현대(아)507-1603	최무웅	
		철재문	B=7m	1/2	162,500	162,500			
		철재문	B=7m	1/2	162,500	162,500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29호

공시송달공고

성명 및 주소 : 김광섭외17건

서류의 명칭 : 2003년 6월 직권 부과분 취득·등록세 납세 고지서 및 2003년 4월 직
권 부과분 취득·등록세 독촉고지서

서 류 : 별첨

위의 고지서를 2003년 6월 30일까지 귀하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함으로 지방세법 제52조에 제2항에 의거 공고하고, 납기를 2003년 7월 21일까지
변경하오니 본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수령하시어 2003년 7월 21일까지 시중은행, 농
협, 수협, 축협 및 새마을 금고 또는 전국우체국과 농협중앙회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03. 7. 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취득세·등록세(부동산)

2003. 6월 직권고지서 및 2003.4월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세무과 취득등록세팀]

연번	과세번호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주소	세액	사유
1	101001-200306-2- 582-13	만수동 946-9 비01호	김광섭	인천 서구 석남동 514-1 수청 1-404	1,035,600	송달불능
2	101001-200306-2- 580-2	만수동 111-417 403호	최영금	인천 연수구 옥련동 39-1	480,000	송달불능
3	101001-200306-2- 560-4	만수동 423-3외 501호	이지형	경기 시흥시 신천동 779-2	3,039,530	송달불능
4	101001-200306-2- 660-15	남촌동 330-30	이창근	인천 남동구 장수동 452	3,144,000	송달불능
5	101001-200306-2- 660-14	남촌동 330-31 330-32	이창근	인천 남동구 장수동 452	6,602,400	송달불능
6	101001-200306-2- 582-6	만수동 891-22	손인수	인천 남동구 만수동 80-221	2,017,400	송달불능
7	101001-200306-2- 670-6	논현동 111-358	노덕남	서울 광진구 자양동 586-18	168,590	국외이주자
8	102001-200304-2- 660-3	남촌동 559-5 외 1필지	김도현	서울 은평 진관외동 340	568,010	송달불능
9	101001-200304-2- 660-13	남촌동 312-12 지층01호	신은미	경기 용인 기흥읍 보라리 553 민속마을 112-1603	403,200	송달불능
10	101001-200304-2- 550-2	간석동 224-740 203호	천하선 교제일 부활교	인천 남동 만수동 114-1	681,120	송달불능
11	101001-200304-2- 660-1	도림동 102-2,4	열린문 교회	인천 남동 도림동 101-4	1,415,220	송달불능
12	102001-200304-2- 581-1	만수동 51-2 801호	정주옥	인천 남동구 간석동 913-9 한창빌라 201호	969,150	송달불능
13	101001-200304-2- 550-3	만수동 51-2 801호	정주옥	인천 남동구 간석동 913-9 한창빌라 201호	546,000	송달불능
14	101001-200304-2- 670-2	고잔동 683-12	윤정구	인천 서구 가좌동 30-100 진주 402동1207호	78,600,000	송달불능
15	102001-200304-2- 670-1	고잔동 683-12	윤정구	인천 서구 가좌동 30-100 진주 402동1207호	127,800,000	송달불능
16	101001-200304-2- 583-7	만수동 1048 1동401호	정은숙	인천 남구 주안동 856-65 신기마을 3차401호	4,113,400	송달불능
17	101001-200304-2 530-3	간석동 425-11 403호	김영자	인천 남동구 간석동 449-6	504,000	송달불능
18	101001-200304-2 550-7	간석동 43-6 401호	정우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719-23	336,000	송달불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31호

노상적치물등의보관및처리에관한공고

우리구 관내 도로를 무단점용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 제54조7(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의거 대집행하고 대집행시 수거된 적치물을 동법시행령 제29조의5(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제2항에 의거 공고 하오니, 해당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리자가 아래 공고 기간내에 동시행령 제29조의6에 의한 적치물등의 반환을 요구시 동법 제86조의2(과태료)에 의거 과태료부과 후 반환토록 하겠으며, 아래 공고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동법시행령 제29조의7(미반환적치물등의 귀속)에 의거 우리구에 귀속 처리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7. 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3년 7월 2일 ~ 2003년 7월 15일(14일간)
도로법시행규칙제29조의2(적치물의관리등)2항
2. 적치물 귀속 처리일 : 2003년 7월15일이후부터 3개월경과후
3. 적치물 귀속 처리내용 : 폐기처리
4. 적치물 보관 및 처리대장 : “붙임 참조”

적치물 보관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	물건명	수량	보관 년월일	보관장소	위반(적치)장소	취급자	비고
1	감자	4	2003. 05.26	간석동창고	간석3동국민은행 앞	한상호	도로무 단점용
2	양파 1 감자 1	2	2003. 05.26	"	간석2동희망쇼핑 센터앞	"	"
3	악세사리1 가방1	2	2003. 05.26	"	"	"	"
4	의자33 테이블9	42	2003. 05.27	"	구월1동미관광장 주변	"	"
5	파라솔	1	2003. 05.24	"	구월1동펜더(아) 주변	"	"
6	포장마차1 가스2	3	2003. 05.28	"	간석3동동사무소 입구	"	"
7	포장마차1 가스2 집기1	4	2003. 05.28	"	만수4동2단지입구 (구)오양산업담당장	"	"
8	파라솔	2	2003. 06.03	"	만수6동농협앞	"	"
9	테이블2 가스2 파라솔1 의자12	17	2003. 06.10	"	간석4동간석역 북광장	"	"
10	손수레	1	2003. 06.05	"	구월2동엘지프라 자 옆	"	"
11	사탕1 파라솔46	47	2003. 06.18	"	간석1동국민은행 앞	"	"
12	팽튀기1 파라솔2	3	2003. 06.18	"	"	"	"
13	군고구마통	1	2003. 06.18	"	간석2동희망(아) 앞	"	"

※ 적치물 귀속처리일 : 공고일 이후부터 3개월경과후 폐기처분함.

적치물 보관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	물건명	수량	보관 년월일	보관장소	위반(적치)장소	취급자	비고
14	고추1 파라솔1	2	2003. 06.18	간석동창고	구월1동킴스클럽 주변	한상호	도로무 단점용
15	파라솔7	7	2003. 06.18	“	남촌동농협주변	“	“
16	양말3	3	2003. 06.20	“	만수6동사무소앞	“	“
17	가스2 파라솔1	3	2003. 06.20	“	구월2동엘지프라 자옆	“	“
			이	하	여 백		

※ 적치물 귀속처리일 : 공고일 이후부터 3개월경과후 폐기처분함.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32호

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대한주택공사 논현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인천논현2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논현동 및 고잔동 일대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사실확인원의 발급에 앞서 관계공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편입대상 물건의 지번 : 별첨
2. 편입되는 물건 및 정당권리자의 현황 : 별첨
3. 관계공부 열람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3. 7. 4 ~ 2003. 8. 2(30일간)
5. 이의신청 방법 :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03. 8. 2일까지) 불복사유를 문서(관계서류)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주) 위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된 바대로 소유사실확인원을 발급합니다.
6. 이의신청 접수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453-2284)

2003. 7. 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보 상 액 산 정 조 서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종류	구 조	규격(㎡)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1	논현동	411-55	가옥	브럭기와	72.16	유미혜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7 A빌리지 103동 203호	
			가옥	조립식판넬	9.36			
			가추	스레트	8.88			
			부엌	브럭스레트	5.94			
			방	브럭스레트	8.80			
			세면장	브럭스라브	4.40			
			창고및보일러실	브럭스레트	5.50			
			보일러실및창고	조립식담장스레트	13.56			
			부엌	브럭스레트	8.97			
			세면장	브럭스레트	4.50			
			가추	스레트	5.75			
			화장실	브럭스레트	2.76			
			폐사	목조스레트	6.84			
			폐사	목조스레트	15.48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33호

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간석4동 일대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사실확인원의 발급에 앞서 관계공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편입대상 물건의 지번 : 별첨
2. 편입되는 물건 및 정당권리자의 현황 : 별첨
3. 관계공부 열람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3. 7. 4 ~ 2003. 8. 2(30일간)
5. 이의신청 방법 :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03. 8. 2일까지) 불복사유를 문서(관계서류)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주) 위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된 바대로 소유사실확인원을 발급합니다.
6. 이의신청 접수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453-2284)

2003. 7. 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34호

재결신청서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수립공원~건설회관간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미협의 물건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03. 7. 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2. 사업의종류와 명칭 : 도시계획사업<수립공원~건설회관간도로개설공사>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4. 열람기간 : 2003 7. 4 - 2003. 7. 18
5. 기타사항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도시계획과에 문의 또는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에 대한 서류 송달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